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Public Nann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Strategies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이승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수 김선미

Departmen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Seungmie Lee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Seonmi Kim

◀ 목 차 ▶

I. 서론

II. '아이돌보미사업' 관련 연구동향과 사업개요

III. 연구방법과 연구절차

IV. 아이돌보미사업의 특성과 효과

V. 아이돌보미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Abstract>

In order to find out better policy strategies for public nanny servic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ajor problems of this service based on 24 in-depth interviews and 7 focus group interviews with nannies, beneficiaries, managers, and public agents.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public nanny service was effectively filling the gap between nursery care services and parent's care services(especially who are both working). Also, this service provided tailored support to parents who have urgent or unexpected problems which prohibit them from properly caring their children. Especially this service effectively worked for temporary needs of caring young children. This study proposes these two strategies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y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updated. Second, the level and types of available time should be raised to fit the diverse needs of parents.

주제어(Key Words) : 아이돌보미 서비스(public nanny service), 재택 양육 지원 서비스(in-home child support service)

Corresponding Author : Seonmi Kim,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wanju University, 592-1 Jinwol-dong, Seo-gu, Gwangju, 503-703, Korea
Tel: +82-62-670-2361 Fax: +82-62-670-2180 E-mail: yupy1005@hanmail.net

* 이 논문은 2010년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 지원사업 개선방안-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보고서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I. 서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맞물리면서 현재 한국사회도 가족의 돌봄 위기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전히 여성의 몫인 현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퇴직사유 중 출산전후 자녀양육이 32.5%(보건복지가족부, 2009a)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친인척과의 유대 약화, 이웃과의 관계단절 등으로 6~15세 아동의 경우 방과 후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이 전체의 36%로 추정되며(보건복지가족부, 2009b), 최근 연이어 사회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사건의 경우 이러한 '나홀로 아동'이 그 주요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돌봄위기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로써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 동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영·유아 대상의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아동연령과 특성(질병 등), 맞벌이 부모의 취업조건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재가과거양육지원서비스인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2006년 시범사업 후 2007년에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작되어 2009년 마침내 전국의 232개 시군구로 확산되었다. 연구 조사 시점인 2010년은 바로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정착된지 2년이 되는 해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그와 함께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어서 연구자들은 향후, 아이돌보미제도의 발전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미 아이돌보미사업은 그 탄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매년 작성된 아이돌보미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이용을 위해 가입한 가정이 4.5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시설중심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정교성이 더해져서 학습돌보미 서비스, 심야와 주말시간대 긴급돌보미 서비스,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기관의 보조인력 역할의 기관과견 돌보미 서비스 등이 도입되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2008, 2009).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격차, 즉 특정 시간대의 수요 집중에 따른 연계의 어려움, 총 이용시간 제한과 서비

스 요금문제, 그리고 서비스 질 등에서 불일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2008, 2009), 사업의 담당부처 변경에 따라 정책방향이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의 변경에서 비롯된 사업의 불안정성도 아이돌보미사업의 문제점을 가중시켜왔다.

이 연구는 이용자가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아이돌보미사업으로의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면 첫째, 사업이 전개되는 전반적인 맥락, 즉 대도시인지 도농복합도시인지 아니면 농촌인지와 같은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둘째, 4년간 네 차례나 수정되어 온 지침변경의 영향을 잘 반영해줄 관계자들의 경험을 수렴할 수 있으며, 셋째,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정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관리자의 삼각구도로 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진행상황이나 그 결과의 상이성을 살펴보기에 좋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의 시행과정에 개입하는 사람들의 주체성이나 행위성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추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아이돌보미사업이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사업으로 개선되기 위해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드러난 아이돌보미사업의 구체적인 특성과 효과가 무엇인가, 특히 아이돌보미사업의 설계 당시 설정된 목적이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이와 더불어 기대 이상의 사업의 다른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며, 그러한 특성과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의 여건과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측면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 가정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사업의 관리자와 서비스제공자 다수를 연구의 대상으로 참여시켜서 그들의 제보 내용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아이돌보미사업' 관련 연구동향과 사업개요

아이돌보미사업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국내의 자녀양육지원체계를 살펴봄과, 아이돌보미사업의 내용을 지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자녀양육지원체계 하에서의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연구 동향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방식에는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현

금지원의 세가지 방식이 가능하다(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 2005). 즉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일부 대체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자녀양육의 담당자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자원을 제공하거나,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이나 양육에 대한 보상 측면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과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자녀양육 지원체계는 세가지 지원방식에서 볼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육아서비스 지원과 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등의 시간자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왔으며, 2009년부터 영유아 양육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있으므로, 세가지 지원방식 중 서비스 지원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서비스 지원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아동복지법 제정(1961년)으로 제도화된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되다가, 정부재정의 효율적 투자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보육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제정(1991년)함으로써 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 제정으로 기존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으며, 90년대에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력하여 보육시설의 규모와 이용아동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낮고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설의 난립, 그리고 90%에 이르는 민간시설 의존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장혜경, 김영란, 서문희, 김용희, 2008)³⁾. 따라서 최근의 보육정책 관련연구는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지원방식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김현숙, 2006; 나정, 2004; 백선희, 김교성, 2001; 송승민, 2006),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 강화,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정책의 확대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족, 특히 여성들은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서비스만으로는 자녀양육 부담 해결에 역부족임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0) 결과, 영아의 경우 기관서비스는 보육시설 33.5%, 비공식 보육이 27.7%로 기관이용율이 높지만, 0세아는 여전히 조부모 등 비공식서비스 이용비율이 31.3%로 보

육시설 이용율 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요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 대상의 아동돌봄 실태연구(장혜경 외, 2008)에 의하면,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방식으로 구분하여 그 여부를 질문한 결과 시설돌봄이 57.4%, 친인척돌봄의 경우 8.1%, 유료가정돌봄의 경우가 15.0%로 나타나 한가지 이상의 돌봄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시설중심의 보육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내 양육지원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성부 영역과제인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이옥, 노성향, 유정, 2004),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민자, 김영주, 박초아, 이진숙, 홍금자, 2006)가 가장 대표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자의 경우 가정내 보육지원의 요구가 높은 영아(0-1세 아)를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외국의 가정내 영아보육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 실시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민자 외(2006)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본의 현장조사를 통해 가정 내 육아지원 서비스제도로 아이돌보미와 육아광장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하고,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파견의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으로 자녀양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로서, 어린이집 중심(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내용과 변화과정은 다음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개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으로서, 0세-만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에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시간제로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2010년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목적은 1)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시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

3) 보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방안 연구(I)-가족내 아동돌봄도움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장혜경 외, 2008), '아이사랑 플랜 2009-2012'(보건복지부, 2009)을 참고하기 바람.

감시하고, 2)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주요서비스 내용을 보면, 파견된 아이돌보미는 아이들이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돌아왔

을 때 부모가 시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것으로서,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놀이활동, 송영서비스 등 부모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교육이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특히 2009년에는 기관 파견 돌보미, 전염성질환 감염아동 대상의 특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표 1〉 2007~2010년 서비스 유형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요금(최저 2시간 기준)			이용
2007년	- 저렴형 - 저소득층(차상위 130%)*이하, 일반형 -일반 가정 대상	유형	본인부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월 120시간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 제출	저렴형	2,000	50% 이하	
2008년	가(舊저렴형),나(舊일반형), 다(전액부담)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유형	본인부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용 시간 - 1월 120시간가능, 1년에 960이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초과 가정도 동일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보육료감면 결과 통보서, 수급자 증명서 등	가형	2,000	50% 이하	
2009년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증빙 서류 - 보육료 감면 결과 통보서 제외 - 이용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소득증빙 자료 등을 제출	유형	본인부담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용 시간 - 월 80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 ※ 전국가구평균소득100% 초과 가정의 경우 필요한 만큼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가형	2,000	50% 이하	
2010년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낮은 소득의 25% 감경 환산.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인 경우도 맞벌이로 인정	유형	본인부담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용 시간 -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지원 - 이용일 현재 만 12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연 720시간(월 80시간) 지원
	-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다형')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소득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	가형	2,000	50% 이하	
2010년	- 기관파견 돌보미,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실시	나형	8,000	100% 이하	이용 제한 - 소득판별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적발시 1년간 이용 제한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서비스를 취소한 때에는 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5회 이상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 가정) - 맞벌이, 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가정 - 쌍둥이,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등	다형	10,000 (기본) 12,000 (심야·주말)	100% 이상	

* : 2007년 4인가구 기준 차상위 130%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임.
 ** : 2008년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796만원임.
 *** : 2009년 4인가구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은 391만원임.
 자료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각 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표 2〉 심층면접대상자 특성

연번	지역명	소속	직책	일시
사례1	광주시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보미사업단	아이돌보미	2010.10.19
사례2	광주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2010.10.19
사례3 사례4	광주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아이돌보미팀장	2010.10.19
사례5	광주시	광주시청	담당공무원	2010.10.19
사례6 사례7	전북 완주군	아이돌보미사업단	아이돌보미 1 아이돌보미 2	2010.11.01
사례8	전북 완주군	아이돌보미사업단	아이돌보미	2010.11.01
사례9	전북 완주군	아이돌보미사업단	팀장	2010.11.01
사례10 사례11	서울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2010.11.11
사례12 사례13	광주시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보미사업단	전담인력 보조인력	2010.11.15
사례14	서울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담인력	2010.11.15
사례15 사례16	광주시 북구	YWCA 아이돌보미사업단	담당부장 보조인력	2010.11.15
사례17 사례18	서울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1 아이돌보미 2	2010.11.15
사례19 사례20	전남 화순군	온 누리 가정지원센터	담당국장 보조인력	2010.11.15
사례21	경북 경산시	대구대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2010.11.16
사례22	광주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2010.12.08
사례23	서울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2010.12.15
사례24	서울시	YMCA 아가야	담당자	2010.12.15

했으며, 2010년에는 영아 대상의 시간제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²⁾.

천안, 울산, 부산, 여수 4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에는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8년에는 65개 사업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32개 시군구, 즉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 수행기관도 다양해졌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과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2007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매년도 지침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활동수당은 5,000원으로서, 정부와 본인부담의 비율이 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소득기준은 년도에 따라 달라졌는데, 2007년에는 차상위 130%를 서비스 유형 구분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9~2010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서비스 유형 구분 기준이 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 합산하여 맞벌이가정의 지원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인 경우도

맞벌이로 인정함으로써 맞벌이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유형의 경우 2007년에는 저렴형과 기본형의 두 단계 유형이었으나, 2008년 이후 가, 나, 다형의 세 단계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서비스 지원의 중요한 제약조건인 이용시간 제한을 보면, 2007년에는 월 120시간 이용제한만 있을 뿐 연간 이용시간의 제한은 없었지만, 2008년에는 연간 960시간의 이용시간 제한이 생겼다. 2009년 이후에는 연간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월 이용시간도 80시간의 제한이 생겼다. 2010년의 경우 연초의 지침에는 2009년과 동일하지만, 추경예산의 확보로 예산이 확대된 2009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줄어든 2010년에는 6월 이후 월 40시간으로 이용시간 제한이 조정되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요자 관리를 위한 이용자격의 강화와 이용제한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지원대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지침도 마련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우선지원대상이 취약가족 중심이었으나 2010년에는 부모의 양육여건 제약이 크거나 양육부담이 많은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의미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이돌보미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3〉 FGI 대상자와 특성

연번	지역명	소속	직책	일시
FGI 사례1	광주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팀원1,2	2010.10.19
FGI 사례2	부산시 충북 천안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과 팀원 센터장 팀장	2010.11.04
FGI 사례3	경북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대구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인력 보조인력 1,2	2010.11.16
FGI 사례4	전남 화순군	온누리 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1-5	2010.11.17
FGI 사례5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팀원1,2	2010.11.23
FGI 사례6	경남 의령군 창녕군 합안군	자원봉사센터 성건강가정상담소 새마을운동지회	각 센터 담당자 3인	2010.12.07
FGI 사례7	광주시	여성노동자회	회장 담당자 보육사 1인	2010.12.08

Ⅲ. 연구방법과 연구절차

아이돌보미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 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간략한 양적 자료로 보완하였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2007년, 2008년,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와 2010년 아이돌보미 사업실적보고서 및 2010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간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현황과 이용가정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한 편, 아이돌보미사업이 상이한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총체성과 맥락성을 담보해주는 질적 자료를 2010년 10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석 달에 걸쳐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는 아이돌보미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고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보미사업의 관리자 및 이용자가정에 대한 심층면접과 표적집단면담(FGI)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표 2〉에서는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과 심층면접일시, 〈표 3〉에서는 FGI참가자 특성과 일시를 제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선정에서 지역요소와 서비스제공기관의 형태 및 사업관련자를 최대한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지역특성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군 지역을 골고루 포함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의 기관장 2명과 시청의 아이돌보미사업 담당공무원 1명, 사업담당자 10명을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8명을 면접하였다. 단, 이용자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인 두 사례만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가정들이 아이돌보미의 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시간제약이 커서, 퇴근 후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는 심야시간, 혹은 가정 일을 한꺼번

에 처리해야하는 주말에 심층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심층면담에 응해주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그 결과 총 23사례를 심층 면접하였다. 서비스제공기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뿐 아니라 전남화순군이나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와 같은 비영리기관을 포함하였다. 심층면담장소는 모두 서비스제공기관이었으며, 시청직원과 이용자는 모두 직장으로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사례 24는 보조제보자로서 '아가야' 사업을 하는 YMCA의 관계자이다.

질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비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사전에 연구자들끼리 합의한 질문을 숙지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좇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면담을 이끌었는데 먼저 종사자들로부터는 예산소진을 위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의 확보 및 매칭방식, 그리고 아이돌보미질(質)관리, 이용자가정의 불만처리, 전체사업의 관리상 난점등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들로부터는 관리자와의 상호작용방식 및 이용자가정에서의 경험, 소진극복의 방식,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사용과 수입 등 서비스제공의 대가 등을 청취하였다. 서비스이용자로부터는 사용하게 된 계기와 사용 기간 및 전반적인 사용경험을 그리고 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5개 구로 된 시 전체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전체적인 현황과 난점, 서비스제공기관이나 구별 차이점을 청취하였다.

FGI는 개별적인 심층면접에서 얻은 자료를 검증하거나 핵심적인 정책이슈를 함께 토의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업관련자로 표적 집단을 구성하였다. FGI사례1은 조사 초기에 FGI의 진행방식과 효과를 사전 테스트하는 성격으로 실시하였고, 사례2와 6은 각각 상이한 지역의 관리자를 모아서 실시하였다.

〈표 4〉 2008~2010년 가족유형별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건수, %)

가정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1월~10월)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맞벌이 가족	141,380	50.5	377,296	39.6	430,485	42.7
비취업주부가족 (일반가정)	80,512	28.7	341,274	35.9	344,355	34.2
한부모가족	42,520	15.2	149,942	15.8	155,230	15.4
장애인가족	6,823	2.4	21,286	2.2	17,106	1.7
조손 가족	824	0.3	8,786	0.9	7,180	0.7
다문화 가족	5,274	1.9	32,184	3.4	28,590	2.8
기타	2,817	1.00	21,159	2.2	25,235	2.5
합 계	280,141	100	951,927	100	1,008,181	100

자료 : 2008년,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10월 아이돌보미 사업실적보고

〈표 5〉 2008~2010년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

(단위: 명, %)

시간대	2008년		2009년		2010년(1월~10월)	
	누계(명)	비율(%)	누계(명)	비율(%)	누계(명)	비율(%)
오전1 04:00~08:00	8,086	2.9	41,276	4.3	54,793	5.4
오전 08:00~12:00	56,531	20.2	221,251	23.2	231,210	22.9
오후 12:00~16:00	92,344	33.0	274,525	28.8	262,095	26.0
저녁 16:00~20:00	100,457	35.9	352,395	37.0	406,382	40.3
심야1 20:00~24:00	21,336	7.6	58,230	6.1	50,754	5.0
심야2 24:00~04:00	1,387	0.5	4,250	0.5	2,947	0.3
합 계	280,141	100	951,927	100	1,008,181	100

자료 : 2008년,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10월 아이돌보미 사업실적보고

그리고 사례3은 각기 다른 세 지역을 한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경우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사례4는 아이돌보미들만을 모아서 FGI를 실시하였다. 사례4는 연구의 증반에 접어들어 연구자들이 새롭게 얻은 질문이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결과들을 놓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지원단 종사자들을 집단 면담한 경우이다. 사례7은 비교자료를 얻기 위해 광주여성노동자회의 가정보육도우미사업담당자와 보육도우미와 함께 FGI한 경우이다.

질적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 2인이 각각 보조연구자1명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초기에 심층면접사례 2,3,4,5와 FGI사례1은 연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심층면접과 FGI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언제나 현장노트를 작성하고 또 간략한 보고서를 당일 작성하여 연구진이 공유하였다. 사례를 더해 가면서 자료를 읽고 간략하게 분석하며 다음 사례의 선정과 질문을 검토하는 Spradely(1979)의 나선형과정을 반복하였다.

전사 자료는 반복해서 읽고 자료 내 분석을 거쳐 자료 간 분석을 실시하되 아이돌보미끼리, 관리자끼리 그리고 이용가정끼리 비교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종합 비교하였다. 수집되고 전사된 자료를 계속 읽으면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인 코딩(김영천, 2008)을 통해, 방대한 자료

로부터 아이돌보미사업이 전개되는 양상과 효과 및 문제를 추출함으로써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얻었다. 코딩의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개방적 코딩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방적 코딩은 Glaser와 Strauss(1967), Werner(1987)가 많이 사용했던 방식으로서, 미리 개발된 코딩목록에 따르지 않고 분석적 귀납 방법을 통해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김영천 재인용, 2008).

이 연구에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 면담하였다. 그리고 질적 자료를 사용하되 양적 자료의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론적 통합'과 두 사람이상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자의 통합'을 사용한 삼각측정(triangulation)으로 연구대상 에 대한 탐색과 이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끝으로 연구자의 현장노트와 간략스케치 및 전사 자료와 코딩으로 산출한 분석 자료를 반복해서 '비교 검토'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동료평가'를 구했으며, 정책입안자의 확인을 거쳤다.

〈표 6〉 2007~2010년 서비스 이용아동의 연령 현황

(단위: 건수, %)

연도별 개소수	12개월 이하	1세	2세	3세	4세	5세	6-8세 미만	9-12세 미만	계	
2007	개소수(38)	27,022	18,267	15,348	15,999	14,358	15,490	22,889	8,089	137,462
	비율(%)	19.7	13.3	11.2	11.6	10.5	11.3	16.65	5.9	100
2008	개소수(65)	61,860	63,379	49,021	40,311	37,863	34,451	70,055	21,229	378,169
	비율(%)	16.4	16.8	13.0	10.7	10.0	9.1	18.5	5.6	100
2009	개소수(221)	147,873	222,405	181,950	145,838	123,141	121,516	242,441	95,383	1280,547
	비율(%)	11.6	17.4	14.2	11.4	9.6	9.5	18.9	7.5	100
2010 (1~10)	개소수(208)	83,171	210,807	211,590	179,657	153,567	134,977	298,004	116,523	1,388,296
	비율(%)	6.0	15.2	15.2	12.9	11.1	9.7	21.5	8.4	100

주 : 2010년은 232개 지역을 208개 사업시행기관에서 운영(중북지역 관찰 기관 포함).
 자료 : 2007, 2008년,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10월 아이돌보미 사업실적보고

IV. 아이돌보미사업의 특성과 효과

1. 아이돌보미사업의 기본 현황과 특성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가정의 기본적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이후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정의 가족유형은 〈표 4〉에서와 같이 맞벌이가정, 전업주부가정, 한부모가정 순이며, 이 세가지 가족유형이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주요 이용 시간대(〈표 5〉참조)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이고 그 다음이 정오부터 오후 4시,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순서이다. 새벽시간과 심야시간대의 이용은 희소하지만, 새벽시간인 오전 4시부터 8시까지의 이용신청과 연계가 조금씩 증가 추세이다.

이용가정 아동의 연령(〈표 6〉)은 아이돌보미사업의 지원대상인 영아부터 12세이하 중에서 6-8세 아동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2개월 이하의 영아로 나타나 이 연령대가 기존 자녀양육지원체계의 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이용 사유(〈표 7〉)를 보면 직장근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유이며, 자녀양육부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이용 사유를 가족유형별로 분석해 보면(〈표 8〉), 맞벌이가족과 한부모가족은 '보육시설시간 외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고, 일반가족(전업주부가족)의 경우에는 '양육 부담 때문'이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났다.

2. 이용자 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사업의 특성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에

서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장점은 정책 설계의 방향과 목적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의해보자.

(1)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재택서비스(in-home service)

아이돌보미사업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과 지역사회이용시설(어린이집 등)에 의한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재택서비스(in-home service)로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도시의 맞벌이 가족이나 취업한부모가족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노동5)에 시달리는 한국의 일하는 부모들은 이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보살펴 줄 자녀양육지원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양육환경,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집에서 보호받고 지내기를 선호하는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의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의 한 맞벌이 가족의 남성 근로자는 "우리 부부는 모두 여덟시 반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한 사람은 일곱시, 한 사람은 일곱시 반에 집을 나와야 한다. 그 때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굶긴 채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은 아이도 힘들고 출근부담이 큰 부모도 할 노릇이 아니다.....네 시 반에 끝나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한 명씩 와서 아이를 찾아갈 때마다 남아있는 모든 아이가 쳐다본다고 한다. 퇴근하고 아이를 찾으러 가려면 일곱시에나 도착하는데 그 때 까지 아이를 기다리게 할 수가 없다(이경목 외, 2010)"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매우 유용한데, 실제로 아이돌보미들은 이른 아침 부모가 출근한 후 자

3)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3시간, 여성은 44.3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의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남성 41시간, 여성 34.3시간으로 나타나 한국의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07-2010년 이용사유별 현황

(단위: 명, %)

이용사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월~10월)	
	누계(명)	비율(%)	누계(명)	비율(%)	누계(명)	비율(%)	누계(명)	비율(%)
직장근무	65,428	67.2	186,355	66.5	583,254	61.3	667,195	66.2
교육참여	6,701	6.9	19,660	7.0	70,365	7.4	61,245	6.1
병원치료	3,375	3.5	13,120	4.7	34,962	3.7	34,789	3.5
산후휴유증	1,508	1.6	3,376	1.2	9,778	1.0	8,382	0.8
집안행사	580	0.6	2,337	0.8	8,897	0.9	8,502	0.8
자녀양육부담	11,245	11.6	37,390	13.3	153,401	16.1	136,449	13.5
기타	8,537	8.8	17,903	6.4	91,270	9.6	91,619	9.1
합 계	97,374	100	280,141	100	951,927	100	1,008,181	100

주 : 2007년 산후휴유증, 집안행사, 자녀양육부담 7월 실적보고부터 추가됨.

자료 : 2007, 2008년,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10월 아이돌보미 사업실적보고

〈표 8〉 2010년 가족 유형별 정기 서비스 이용사유

(단위: 명, %)

정기 서비스 이용 사유	맞벌이가족 (비율)	일반가족 (비율)	한부모가족 (비율)	기타 (비율)	전체 (비율)
질병 등 자녀의 개별적인 돌봄이 불가피해서	156 (7.6)	76 (9.2)	62 (12.1)	18 (10.7)	312 (8.7)
보육시설 시간(7:30~19:30) 외(주말 및 공휴일 포함)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216(58.9)	178 (21.7)	321 (62.5)	54 (32.3)	1769 (49.6)
지역 내 보육시설이 없어서	31(1.5)	6 (0.7)	8 (1.5)	6 (3.6)	51 (1.4)
취업준비를 위해서	140 (6.8)	86 (10.5)	39 (7.6)	14 (8.5)	279 (7.8)
양육 부담(다자녀, 쌍둥이 등) 때문에	132 (6.4)	301 (36.6)	20 (3.9)	25 (15.0)	478 (13.4)
주 양육자의 건강 문제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서	39 (1.9)	61 (7.4)	13 (2.5)	20 (12.0)	133 (3.7)
기타	349 (16.9)	114 (13.9)	51 (9.9)	30 (17.9)	544 (15.3)
합 계	2,063 (57.9)	822 (23.1)	514 (14.4)	167 (4.7)	3,566 (100)

주 : 맞벌이가족은 파트타임, 프리랜서 활동, 일용직 포함. 일반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이 양육을 담당하며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자료 : 2010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고 있는 아이를 깨워 밥을 먹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 주고, 오후에 귀가를 돕고 집에서 간식을 챙기거나 학원에 보내주기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었다.

“아침에 가는 집 엄마는 재할선생님, 아빠는 회사다니며 시간강사, 오전 7시 반에 가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그 집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한다. 이게 없을 때는 맨날 동동거리고 아이들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저녁에 가는 집은 아빠가 대기업 다니고 엄마는 은행 다니는 거 같은데 아파트에서 유치원 차 기다려서 6시부터 씻기고 저녁 먹이고 그림 공부하고 놀이하고(사례 10)”

이용자가정 가운데 한부모가정의 취업주부인 사례22는 가형 대상자이지만 월 40시간의 사용제한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월 100만원에서 170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만약 아이돌보미가 없어서 양육을 위해 지금의 소득활동을 접는다면 장기적으로 자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가정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가정의 기초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편, 사업관리자와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가정(사례 23)의 심층면담 자료 및 FGI자료 분석 결과, 보육시설과 학교의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어려운 틈새시간이 발생할 때, 그리고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부모가 근무시간과 맞추어 아이를 데려오고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운영한다고 해도 부모가 아이들이 가정에 있기를 희망하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때 아이돌보미의 서비스는 매우 유효하였다. 이런 결과는 아이돌보미 신청 및 연계가 물리는 시간이 오후 네시부터 여덟시까지이고 그 다음이 정오부터 네시 그리고 아침 여덟시부터 정오까지로 나타난 전국 조사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해준다(표 5).

특히 이러한 틈새보육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지역의 아이돌보미 관리자(사례4)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가정 150가정 가운데 70-80%가 정기적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매일의 양육틈새를 매워주는 서비스로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생각할 때, 가형에 대한 40시간의 제한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틈새를 매우도록 아이돌보미를 활용한다고 할 때, 하루에 두 시간씩 주 5일을 활용해야 하는데 가형가정으로서 이러한 요건에 맞는 직업을 가진 맞벌이 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이 많지 않고, 잦은 야근이나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에 더하여 몇 번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이 방치되거나 비싼 다형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계경제에 손실이 크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가 현재 양육지원체계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반면, 서비스 이용시간의 제한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불만요인으로 지적한다.

(2) 전업주부의 양육부담과 소진상태를 완화해 주는 서비스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하는 취업주부에 비해 자녀양육 여건이 나은 편이나, 과거와 달리 다른 가족원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고립된 핵가족으로 생활하는 데에서 오는 양육스트레스는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 중 전업주부가족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는데(표 4), 특히 다자녀가정이거나 자녀의 태율이 적고 어린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전업주부의 상황을 보면, 영유아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는 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남편이 귀가하기 전까지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함께해야 하는 부담을 아이돌보미를 통해 줄이고 있었다. 바로 사례 23은 31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전업주부 가정인데, 처음에는 정부의 이용로지원 대상인 나형으로 시작했으나 남편 소득의 증가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다형이 되었지만 서비스 이용시간을 오히려 늘려서 현재 월 9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늘어났지만,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려서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사례이다.

이처럼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전업주부가정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며,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서울시 아이돌보미사업 관리자(사례11,14)에 따르면, ‘오전에 선택해서

서 이용하시는 분은 맞벌이 가정이 좀 많고, 오후 시간에는 맞벌이 외에 일반 가정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고립된 가족 내에서 혼자 하루 종일 육아에 매달려야하는 전업주부에게 숨쉴 틈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전업주부의 취업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다양한 상황별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

일 대 일 서비스의 특징을 지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 요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민감한 대응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요구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부모의 취업여부와 근로조건, 양부모의 존재여부, 자녀 양육에서 중요시 하는 점, 자녀의 연령·태율·자녀수, 그리고 자녀의 성격이나 발달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심층면접자료와 FG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리자들은 아이돌보미의 특성과 이용자가정의 객관적인 조건 및 주관적 요청을 파악하여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서비스제공 현장에서 아이돌보미들은 다시 이용자 가정의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활동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아이돌보미들의 사례를 보면, 아이돌보미 개인의 판단력과 아이에 대한 애정, 신체적인 노력 등 최대한 많은 기능을 동원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다양한 가정의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사례를 다음 인용구들로부터 살펴보자.

‘돌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2,3학년 저학년을 돌보면서, 점심 챙겨주고 간식 챙겨주고 학원에 갈 때까지 데리고 놓고 있다가 학원에 데려다 준다.’ ‘혼자 놔두면 안되는 한부모가정의 지적장애 어린이를 운동장에 데리고 가서 같이 공을 차고 달리기하고 노니 까 그만 두고도 지금도 가끔씩 전화해서 오라고 해요.’ ‘애들이 어릴 때 엄마가 가출해서 시설에서 자라다가 아빠에게 와서 문제가 많은 애들로 반항이 심하고 아빠가 없으면 아침도 굶고 이불 깔아놓은 상태로 하루 종일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깐 가서 방정리도 해 주어야하고 아침도 먹여줘야 하고 학교도 보내야 해요.’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가출한 집 아이 때문에 처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이제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앉혀놓고 선생님 눈 똑 바로 봐, 네가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생각해 봐! 잘못했어요. 지가 수궁하면서 지금은 그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직접 책가방도 메고 저희 집도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데, 영아의 신체적 돌봄, 유아와 놀아주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숙제봐주기 등의 학습도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자들은 아이돌보미의 개인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담당으로 특화해서 연계하기도 하고,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대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시는 거

죠! 아이 편에서도 연년생 동생 출산으로 놀이가 부족한 놀이육구를 충족시켜 줘요.'라고 한다. 또한 항상 혹은 일시적으로 보육시설을 거부하는 아이, 집단 보육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 같은 연령대 아동과 비교하여 성장이 느려 집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아이를 위해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보내는 대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상황은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양육자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화가나 배우, 프로듀서나 운동선수처럼 자녀양육이 때로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경우, 3교대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나 임시 일용직 혹은 자영업을 하는 부부 등 양육자의 노동조건과 일의 특성 때문에 이용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앞서의 다양한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서비스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와는 달리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많았다. 면담 결과, '두 아이를 모두 돌보는 부모가 갑자기 한 아이를 긴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나, '엄마가 아이를 얻어치러나 심리상담을 위한 클리닉에 데리고 다니다가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못 데리고 가는 상황', '부모의 갑작스러운 회식과 야근', '부모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입원', '아이가 아파 등원이나 등교가 어려울 때'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일시·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개별가정으로서 대체자원을 즉각적으로 투입하기 힘든 때, 아이돌보미의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였다. 다만, 이미 아이돌보미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비공식적인 연계를 먼저 하고 추후에 사업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이틀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현재의 지침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자녀양육지원 뿐 아니라 가족 지원의 잠재력

아이돌보미와 관리자 그리고 이용자가정에 대한 면담으로부터 아이돌보미활동이 단순하게 채택 자녀양육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활동 그 자체로 가족지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로 사례 22의 한부모가정 사례를 살펴보자.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사례 22는 가정환경을 공개하기 싫어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아이돌보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는 이 한부모의 직장 적응문제까지 상담해주고 있다.

"저 같은 경우, 한부모에다 직장에서 셀러리맨이야. 싱글맘이야. 그러면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약자입장에서 직장생활을 공공기관에서 하

고 있던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갖는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한테 완충작용을 해 주는 거죠. 거의 카운슬러역할까지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양육 플러스 나의 직장생활 카운슬러 플러스 우리 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나보다 더 많이 아셔. 우리 아이 내복이 몇 개인지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한 부자가정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도 아버지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다. "아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 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누나처럼.....". 사례 23의 전업주부 이용자도 "저희는 너무 감사한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애랑 잘 맞고 애도 너무 잘 따라주고 선생님도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랑도 고마워하고, 왜냐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서.....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라고 하였는데, 아이돌보미의 활동 결과 양육스트레스 완화로 부부관계가 원만해진 것이다. 그리고 사례 8의 아이돌보미는 이용자가정의 주부가 겪고 있던 우울증이 아이돌보미가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열린 대화상대가 되어 줌으로써 완화되었다고 전해주었다. 또 사례 10의 아이돌보미는 돌보는 아이의 정서장애에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기관이용을 권장하고 실제로 상담 치료기관에 데리고 다닐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해 주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가족지원의 효과는 아이돌보미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례 14의 아이돌보미사업 관리자는 "저희 구내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파견하면서 그 장점이 이런 가정들을 하나하나 발굴할 수가 있게 되었구요. 그 가정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라인 프로그램으로 흡수를 해서 보안을 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라고 한다. 사례 11의 관리자도 가형 이용자가정 가운데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가정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하였고, 다문화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0)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가운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가족지원사업팀에 연계하였고, 또 가족상담팀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0세아 반에 기관파견돌보미를 파견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대상 아이들-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및 다문화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병행하였고, 기부처를 찾는 사회단체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을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족지원의 효과에 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자(FIG 사례1,2, 심층면접 사례3,4,10,14)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대상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른 사업들과 종합적으로 제공될 때 개별가정의 문제해결이나 건강성 증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아이돌보미들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용자 가정의 모든 형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일부 부담을 나눠지고 있다는 점은 가족지원의 잠재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가족지원 효과는 정책선택 시 예상하거나 크게 기대되지 못한 특성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가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지원의 잠재력이 더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 가족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꾸준히 파견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 자체가 긴급일시잖아요. 한 선생님이 한 가정에 꾸준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 사정이라든지 이용자 사정에 따라 한 선생님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체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꾸준히 가면 그 가정 사정을 알고 아이랑 친해져서 이용자랑 친해져서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저희 잠깐 동안 등하원서비스나 어머님들 없고 아이들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이런 서비스 잠깐 한 두 시간 서비스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고,(사례 11)"

또한 아이돌보미들 가운데에는 직업윤리상 이용자가정의 사적인 사정을 발설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지원을 위한 사례가정의 발굴차원에서 아이돌보미들의 활동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윤리를 지키면서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정에게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용자가정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돌보미용 행동지침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3.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사업의 방식과 여건들

1) 소규모 관리단위를 통한 섬세한 운영

앞서 아이돌보미서비스의 특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이용자가정의 요구와 그에 대응해야 할 아이돌보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연계하려면 이용자가정과 아이돌보미 양측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며 필연적으로 관리단위는 소규모이어야 한다.

"가정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무나 그 가정에 보내서도 안되고, 그 가정에 맞는 선생님들 보내야 돼요(사례 19)."

또한 소규모 관리의 장점은 관리자와 아이돌보미와의 긴

밀한 관계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긴급상황 대처, 가족지원의 가능성(잠재력)을 꼽을 수 있다. 즉 관리자들은 아이돌보미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그리고 파견가능한 시간대까지 파악하고 있어서 이용가정의 긴급 요청 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의 돌봄을 위한 단순 연계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는 아이돌보미와 관리자간의 친밀한 신뢰 관계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이용자가정이 아이돌보미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가정의 사정과 여건,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모임도 운영한다. 따라서 232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담당자나 이용자가정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소규모단위의 관리는 일견 과도한 관리비용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장방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결과로는 대체로 1명의 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섬세하게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이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다양함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여건임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높여주는 인력관리방안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만족하는 또 다른 요인은 공적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는 점, 사업기관에서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인력관리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모집과 자격 이수를 위한 교육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 돌보미를 선발하여 최소한의 아동발달과 양육 관련 기초지식을 교육함으로써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력관리방안은 민간 베이비시터나 민간업체 소개에 의한 도우미들의 경우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자격관리나 교육실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호하고 신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사업담당자들은 사업기관에 따라 아이돌보미에게 이용자가정에 도착하여 문자로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정의 엄마 사인이 들어간 시간별 활동일지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또 컴퓨터에 입력한다. 또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방식 역시 이용자가정이 신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간 중간에 센터에서 오셔가지고 긴급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놀랐고 신뢰를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집안일은 못하게 하고 아이만 돌보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물론 엄마가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얘기만 봐달라는 주의기 때문에(사례 21)”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기획하는 것에 있다. “아이돌보미는 대개 자긍심이 낮아서 관리자의 응원과 피드백이 중요하고 관리자와 아이돌보미의 관계형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관리자들은 자조모임과 학습모임을 주도하며 장난감을 구입하여 아이돌보미들이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며, 사례회의도 마련하여 상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한다. 또한 사업담당자는 이용자가정과 아이돌보미와의 갈등 상황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시 이용자가정의 만족을 높여주고 아이돌보미의 탈락방지와 지원에 있어 중요한 기능이다. 물론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관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오래 근무한 담당자일수록 효과적인 해결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V. 아이돌보미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 보육체계의 틈새를 보완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정의 상황과 요구에 최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많은 장점을 지닌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은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서의 어려움과 한계에 초점을 두어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이용대상 선정 기준의 보완

아이돌보미사업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누구를 이용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사업의 이용대상이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이 필요한 순서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순(동 순위인 경우 저소득층 우선)으로 정해진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는 아이돌보미사업이 부모의 양육여건을 고려한 자녀양육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며, 실제 이용현황에서도 맞벌

이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이용대상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데, 지침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납입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경우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리자들은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사본과 같은 자료도 증빙자료로 활용해 조건을 완화시켜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재의 소득증빙방식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이용자 가정의 피고용 상태나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광주 여성노동자회의 “지역이 함께 하는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에서는 월급통장을 증빙자료로 인정하며, 그 것도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관리자가 통화해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사업에서도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나 면담에 의한 결정방식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결합하여 판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전업주부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제한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초점을 두는 재정담당자들은 자녀양육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전업주부에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기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에 비해 여건이 훨씬 좋지만, 현대사회의 고립된 핵가족 내에서 24시간 돌봄을 요구하는 영아나 어린 자녀를 돌 이상 돌보는 전업주부 역시 많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우리사회에서 전업주부에게도 제한적이거나 그 사용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덕분에 부담을 덜게 된 엄마들이 둘째, 셋째를 낳아 영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보고에서도 전업주부 지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이용시간 증가 및 차등화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가정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보기에 시급한 개선사항은 총이용시간의 증가문제였다. 총이용시간의 제한은 이용자가정의 비용부담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양육되는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아이돌보미 혹은 장차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인력을 유지 혹은 유인하는 결과에까지 연결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높은 이용자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보육시설의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에서 틈새를 메우는 시간으로 최소 아침, 저녁 중 하루 두 시간만을 사용하면 월 최소 40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침과 저녁 모두 두 시간씩 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중 5일 근무하는 부모의 경우에 월 최소 80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더하여 주말까지 일을 하는 경우(8시간씩 2일)를 포함한다면 어떤 이용자 가정으로서는 최대 160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월 40시간의 제한은 최소 6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좀 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들이 아픈 경우 하루를 병원이나 집에서 돌봐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40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

또한 이용자가정의 특성-자녀의 수, 소득수준, 혼인지위, 자녀연령과 터울, 주 양육자 취업여부, 취업시간의 특성, 자녀와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반영하여 총시간의 양이 상이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시간제한을 다르게 차등화할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활동과 양육을 한 사람이 담당해야하는 한부모가정은 총이용시간을 더 많이 늘려 줌으로써 성공적인 양육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일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한부모의 경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시간제한은 단기적으로는 현장관리자에게 480시간에서 960시간의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기관의 이용자가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장관리자들은 사업단위별로 재량시간을 할애 받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관리자가 신속히 판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리자의 재량권은 이용자가정의 서비스 이용의 공평성문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이에 대한 민원제기 시 책임소재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처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은 부모의 좌절과 아이돌보미의 죄책감, 그리고 아이들의 방치와 원망을 축적하기 쉽다.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에 비해 시간제한은 유일한 불만사항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육시설과 중복문제를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총사용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총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시간제 형태의 정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족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성도 증가하여 아이돌보미사업의 부수적 사업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현장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운영기준의 마련이

개선될 때 자녀양육지원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천(2008).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현숙(2006).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재정포럼**, 제119호, 30-55,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나정(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백선희·김교성(2001).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과 재정정책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27, 210-237.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a). **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b). **09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 외(2010).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송승민(2006).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체계 비교: 보육정책과 보육료 지원을 기준으로, **EU학 연구**, 11(1), 73-97.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0). **아이돌보미사업결과보고서**. 서울: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경목, 조동성, 이기영, 김효선, 김선미, 장은미 외(2010).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 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이 옥, 노성향, 유정(2004).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서울: 여성부.
-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서문희, 김용희(2008).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연구 I: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민자, 김영주, 박초아, 이진숙, 홍금자(2006). **가정내 육아 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2007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2008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 **2009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Y: Holt, Reinhart & Winston.

접 수 일 : 2011년 3월 3일

심사시작일 : 2011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30일